

의안번호	2218331
의 퇴 인	김남희 의원
회 답 일	2026. 7. 10.
추계번호	26C83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변경하고, 출산크레딧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여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4조 1,529억원(연평균 2조 8,306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2,689	7,945	8,129	18,763	6,254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14,367	16,506	18,674	20,974	23,428	93,948	18,790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안 제100조의5)	3,976	4,728	5,611	6,645	7,857	28,817	5,763
추가재정소요	18,343	21,234	26,974	35,564	39,414	141,529	28,306

- 주: 1. 군복무크레딧 지원의 추가재정소요의 연평균 금액은 2029~2031년의 3년 평균값임
 2. 본 추계서의 육아휴직자 보험료 지원의 추재정소요 추계는 통상임금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결정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서에서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확대,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에 따른 연금급여 지출 증가분은 연금 수급시점에 발생하여 추계기간 내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군복무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함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 권을 획득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자녀를 출산한 날(또는 최초 가입 일)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첫째·둘째 각 21개월, 셋째자 녀부터 자녀당 추가 27개월을 지원 ※(현행법) 자녀가 있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자녀당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의무규정
3	안 제100조의5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 ※ 기여금이란 현행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사업장가 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함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이 므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국 가가 지원함을 의미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 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	
3	안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 2022~2025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함
 - (군복무크레딧)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 군복무크레딧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병역의무 수행 시작 시점을 병역준비역이 되는 시점이 아닌 해당 병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해석함
 - (출산크레딧) 안 제19조제1항은 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자가 된 날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출산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가입이력이 없는 출산자의 경우 출산 시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시에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개정규정 적용
 -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안 부칙은 법률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법률 시행 당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73호)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육아휴직¹⁾이 도입될 예정이나, 현 시점에서는 단기육아휴직자 및 이들의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단기육아휴직자를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서에서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확대, 육아휴직자 연금 보험료 지원 신설에 따른 연금급여 지출 증가분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연금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추가재정소요에 포함되나,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1)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환산하여 지급함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된 추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8.7개월 의무복무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²⁾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³⁾,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7년에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개정 규정 적용
 - － 본 추계서에서는 실제 해당 병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해석함
 - (군 입대 연령) 병무청 제출자료에 따른 2024년 군복무크레딧 대상 병역의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입대자 비율) 2013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4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0.5만명⁴⁾)의 2024년 29세 남성 인구(37.2만명⁵⁾) 대비 비율(82.0%)을 산출하여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입대자 수에 2024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직역연금 가입자 수(2.5만명)의 비율(6.7%)을 적용하여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2)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3) 징집병을 의미함(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4) 병무청 제출자료

5)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3세 인구	269,114	249,245	243,274	252,157	265,968
군복무크레딧 미대상자 및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205,842	190,644	186,077	192,871	203,43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병무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2~2024년 입대자들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3]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4	18	20	21	21	18.7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대체복무 포함)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서에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가 2027년 21세로 입대하여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복무를 마친날에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예정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3세가 되는 2029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7개월 지원 기간 중 6.7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9	2030	2031	2032	2033
2027	205,842	205,842 (6.7개월)	205,842 (12.0개월)			
2028	190,644		190,644 (6.7개월)	190,644 (12.0개월)		
2029	186,077			186,077 (6.7개월)	186,077 (12.0개월)	
2030	192,871				192,871 (6.7개월)	192,871 (12.0개월)
2031	203,435					203,435 (6.7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⁶⁾에서 도출된 A값의 50%⁷⁾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적용

[표 5]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9~2031년

구 분	2029	2030	2031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543	3,680	3,827
보험료율(% , B)	11.0	11.5	12.0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 \times 50\% \times B$)	195	212	230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복무크레딧의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1조 8,763억원(연평균 6,254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군복무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 (안 제18조)	-	-	2,689	7,945	8,129	18,763	6,254

주: 연평균은 2029~2031년의 3년 평균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5년까지의 국민연금 실적치, 2026년 1분기까지의 경제변화를 고려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7)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지원 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지원 기간) 개정안에 따라 아래 [표 7]과 같이 지원 기간을 확대 적용

[표 7] 개정안에 따른 출산크레딧 지원 기간 확대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첫째	12개월	21개월
둘째	+12개월 ※ 두 자녀 총 24개월	+21개월 ※ 두 자녀 총 42개월
셋째	자녀당 +18개월	자녀당 +27개월
이상	※ 세 자녀 총 42개월, 네 자녀 총 60개월 등	※ 세 자녀 총 69개월, 네 자녀 총 96개월 등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출생아 수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⁸⁾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0%)을 차감하여 활용
 -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의 2024년 기준 출생아의 출산 순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

[표 8]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0세 인구	227,833	237,996	247,279	255,406	262,201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209,606	218,956	227,497	234,974	241,225
첫째	128,561	134,295	139,534	144,120	147,954
둘째	66,753	69,731	72,451	74,832	76,823
셋째	11,748	12,272	12,750	13,170	13,520
넷째	1,933	2,019	2,098	2,167	2,225
다섯째	434	453	471	486	499
여섯째	126	131	137	141	145
일곱째	37	39	40	41	43
여덟째 이상	14	16	16	17	16

주: 본 추계서에서 여덟째 이상은 여덟째로 간주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⁹⁾에서 도출된 A값의 100%에 보험료율을 적용

[표 9]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국민연금 A값 추정치(천원, A)	3,302	3,417	3,543	3,680	3,827
보험료율 안(% , B)	10.0	10.5	11.0	11.5	12.0
보험료 지원 단가(천원, A×B)	330	359	390	423	459

주: 보험료 지원 단가는 천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금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지원분은 12개월 단위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즉, 첫째와 둘째는 출산한 해에 12개월을 지원한 후 차년도에 9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셋째 이상은 출산한 해에 12개월, 차년도에 12개월, 차차년도에 남은 3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크레딧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조 3,948억원(연평균 1조 8,790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 및 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14,367	16,506	18,674	20,974	23,428	93,948	18,7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5년까지의 국민연금 실적치, 2026년 1분기까지의 경제변화를 고려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잠정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한 결과

나.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안 제100조의5)

-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추계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안 제100조의5제2항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2022~2025년의 육아휴직급여 총 지원 개월 수와 평균 통상임금액 추이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

[표 11] 2022~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단위: 개월,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해당연도 총 지원 개월 수	1,432,416	1,346,124	1,379,222	1,776,058	7.4
평균 통상임금액	2.81	2.91	3.09	3.31	5.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추계결과, 국가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여금(즉, 총 보험료의 50%)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조 8,817억원(연평균 5,763억원)으로 추계됨

[표 1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50%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연간 총 지원 개월 수(개월, A)	2,049,820	2,202,141	2,365,781	2,541,580	2,730,443	-	-
평균 통상임금액(백만원, B)	3.7	3.9	4.1	4.4	4.6	-	-
보험료율(% , C)	10.5	11.0	11.5	12.0	12.5	-	-
추가재정소요 (억원, $A \times B \times C \times 50\%$)	3,976	4,728	5,611	6,645	7,857	28,817	5,7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육아휴직자 보험료 지원의 추재정소요 추계는 통상임금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예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결정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